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지침

제정 2009.12.15
개정 2010.06.02
개정 2011.02.28
개정 2011.09.30
개정 2012.03.26
개정 2013.05.13
개정 2013.12.31
개정 2014.11.19
개정 2015.11.17
개정 2017.08.30
개정 2018.10.02
전부개정 2020.12.10
개정 2021.12.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경력인사의 축적된 경륜을 교육·연구 등 현장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술, 연구개발 및 지역개발 부문의 기반과 정책개발능력을 확충하여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경력인사의 구분)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분야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 분야로 한다. 초빙활용되는 전문경력인사는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와 비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로 구분하되,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는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근무한 자로 본다.
2. 비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는 최종적으로 비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근무한 자로 본다. 다만 이공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로 볼 수 있다.

제3조(활용부문)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연구소(공공기관) 부문
2. 지역개발 부문

제4조(활용기관) ①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활용기관”이라 한다) 중 제3조제1호에 따라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공공기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소(공공기관)로 하되, 그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사립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 다만 4호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과기특성화대학은 제1호에 의한 대학으로 본다.
 2. 특수한 전문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고등교육기관이 수도권에만 소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특수고등교육기관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관(연구소).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은 상위 공공기관을 활용기관으로 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활용가능인원 규모 이내에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부문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상위 광역자치단체를 활용기관으로 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활용가능인원 규모 이내에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활용인원) ① 활용기관별 전문경력인사 활용인원은 현재 선정 활용중인 전문경력인사를 포함하여 최대 5명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대학 및 연구소(공공기관)의 경우 규모에 따라 활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활용기관별 활용 가능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수 10,000명 이하의 대학은 최대 활용인원을 5명으로 한다.
 2. 재학생수 10,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의 대학은 최대 활용인원을 6명으로 한다.
 3. 재학생수 15,000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최대 활용인원을 7명으로 한다.
 4. 각 호의 재학생수는 대학 정보공시 항목 중 재학생 수(대학 및 대학원)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소(공공기관)의 활용기관별 활용 가능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수 500명 이하의 기관은 최대 활용인원을 5명으로 한다.

2. 임직원수 500명 초과 ~ 1,000명 이하의 기관은 최대 활용인원을 6명으로 한다.
3. 임직원수 1,000명을 초과하는 기관은 최대 활용인원을 7명으로 한다.
4. 각 호의 임직원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임직원 정원(무기직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설기관의 임직원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활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활용기관의 장은 전문경력인사의 활용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1.12.08>

1. 신청 전 활용예정인사의 적정성(부정부패, 성비위 연루 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활용계획의 작성, 이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활용 결과 보고서의 제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장려금의 지급, 관리 및 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 및 활용인사 관련 변경내용 보고에 관한 사항

제2장 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의 평가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심사위원으로는 4인의 당연직 심사위원과 7인 내외의 선임직 심사위원을 둔다. 재단 사무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의 담당자(사업 관련 부서 혹은 담당 부서의 실장급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고 이사장이 교육·연구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명하거나 공모 또는 추천받아 선임한 위원은 선임직 위원이다.
- ③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된 위원의 후임자는 기존 위원과 임기만료를 동일하게 한다.
- ④ 선임직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작성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단 사무총장이 담당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심사위원회 운영 일체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위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 궐위 혹은 공석이 될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선임직 위원 혹은 위원장의 사전 지정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 선임직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간사는 위원장이 재량에 따라 임명하는 것으로 하되, 본 재단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관장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소집 및 권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신청자(활용기관 및 대상인사)의 활용계획 평가 및 적정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 ①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위원 혹은 업무와 유관한 담당직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참관하고, 당연직 위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심사위원회에 공유하여 확인한다. 회의록은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공개 범위, 시점 및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지원 신청 및 선정

제10조(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 ① 제3조제1호가 정하는 대학 및 연구소(공공기관)부문의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된 사람
2.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으로 재직된 사람
3. 「군인사법」상 장성(將星)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4.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5.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6.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의 상근 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혹은 병원의 상근 임원이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포함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기관 내 최상위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은 제외한다.

다.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 다만, 과학기술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한다.

라.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3조제2호가 정하는 지역개발 부문의 전문경력인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재직한 사람.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군인사법」상 장성(將星)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3.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중견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의 상근 임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 혹은 병원의 상근임원이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포함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기관 내 최상위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한다.

다.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1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관 또는 지도관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라. 연구원 30인 이상의 민간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하고 책임급(부장급)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마. 종업원 50인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

바.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경력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인사가 활용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일 경우
2. (1) 대학 및 연구소(공공기관) 활용인사의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와 (2) 지역개발부문 활용인사가 활용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
3. 해당 인사가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일 기준)한 경우.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퇴직기관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4. 해당 인사가 활용개시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서 상근직으로 재직하거나 연 3,6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할 경우
5. 해당 인사가 부패행위 징계내역이 있거나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건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12.08>

⑤ 요건검토위원회는 전문경력인사의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7조의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08>

제11조(지원조건) 활용기관에서의 전문경력인사 활용에 대한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부문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매 학기 정규강의를 1강좌 이상 전담하여야 한다.
2. 연구소(공공기관) 및 지역개발 부문의 경우 활용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비 1,000만원/년 이상의 연구과제 또는 지역특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매주 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조건 이외의 전문경력인사의 구체적 근무 조건은 활용기관과 전문경력인사의 약정에 의한다.

제12조(사업공고) 재단은 사업 선정계획 확정시 공중통신망 등을 통해 평가지표, 사

업추진 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08>

제13조(신청서 제출) ① 활용기관의 장은 재단이 정하는 시기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활용기관의 장은 해당인사가 최종 경력기관에서의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 시점에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이후 사업 개시 시점에 퇴직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서 평가) ① 활용기관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신청서 평가 시, 과학기술분야 신청 인사의 경우와 활용기관에서 연구장려금을 월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의 소속기관과 신청자의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등 공정한 평가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관련 신청자에 대한 신청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과학기술계, 여성,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의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설 2021.12.08>

제15조(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신규 과제 선정 시 총선정자 중 50% 이상을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신청자 중 과학기술계 전문경력인사 신청자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경력인사의 신규 선정 시 출신분야별 선정자의 수가 전체 선정자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선정자의 출신분야별 구분은 아래 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선정자의 출신분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 각부(각 중앙 및 산하 행정기관, 부처별 각각 구분), 군, 개별 공공기관, 개별 산업체 등의 구분에 의한다.

④ 전문경력인사로 이미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제4장 지원 및 평가

제16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비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교재연구비, 교통비, 자료수집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연구장려금(research grant)으로 지급한

다.

- ② 제1항에 의한 연구장려금은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활용기관에서 연구장려금의 1/3이상(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재단은 그 차액을 지급한다.
- ③ 연구장려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활용기관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연구장려금 이외의 금액을 전문경력인사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출장경비 등 발생 시 이를 실비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활용기관의 내부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지원기간) ① 전문경력인사의 활용지원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3차년도 개시 전 제20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3차년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개시일은 매년 전반기는 3월 1일, 후반기는 9월 1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정해진 활용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장은 활용개시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은 총 지원 기간(3년)에 포함한다.

제18조(보고서 제출) ① 활용기간 내 차년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활용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차년도 활용계획서 및 기타 성과증빙자료(연구성과물, 강의평가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계평가 대상자는 3차년도 개시 전 제1항의 보고서 외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단계평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활용기관의 장은 활용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 및 기타 성과증빙자료(수강생 강의평가서, 연구성과물 등)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인사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연차점검) 활용인사의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차점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로 대신한다. 다만,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활용기관이 활용 중단을 희망할 경우 차년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0조(단계평가) ① 3차년도 개시 전 단계평가를 통해 3차년도 계속지원여부를 결

정한다.

- ② 단계평가는 제1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 ③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 중단, 현장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단계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계획의 변경) ① 활용기관에서 활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인사의 당초 활용 분야 내에서 활용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08>

② 선정 이후 재단의 승인 없이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활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1.12.08>

제5장 선정 취소와 지원 중단

제22조(선정 취소) ① 선정된 전문경력인사 중 이미 선정된 이력이 있는 인사로 밝혀진 경우 재단은 선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연구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 허위 사실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단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재단은 그 때까지 해당인사에게 지급한 연구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용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된 연구장려금 중 잔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수강생이 없거나 연구과제 또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지속적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활용기관의 장 또는 대상인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4. 단계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5. 활용 중 부패전력이나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 등의 위법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6. 활용 기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서 상근직으로 재직하거나 연 3,6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수령할 경우
7. 기타 심사위원회가 지원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활용기관의 장

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중단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을 전문경력인사 최종근무일로 보고 재단은 기지급된 연구장려금에 대해 최종근무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그 차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15)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승인한 사항은 종전에 승인한 내용에 의한다.

부칙 (2010.06.02)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승인한 사항은 종전에 승인한 내용에 의한다.

부칙 (2011.02.28)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9.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3.26)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5.13)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3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1.19) (정부조직법)

이 지침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7)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3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 선정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0.02)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제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단서조항 및 제5조 제2항 제3호 바목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 선정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1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와 제17조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 선정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08)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